

② 第1項의 檢査에 소요되는 비용은 乙의 부담으로 한다. 다만, 示方書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에 소요되는費用은 甲의 부담으로 한다.

③ 檢査結果 불합격된 工事材料는 지체없이 工事現場으로부터 이를 반출하여야 한다.

④ 工事材料中 示方書 등에 품질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中等品質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
⑤ 乙은 甲의 승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檢査完了된 工事材料를 반출할 수 없다.

第10條 (支給材料·貸與品) ① 甲의 支給材料 또는 貸與品은 乙의 立會下에 인도한다. 이 경우 乙은 그 品質 또는 規格이 사용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甲에게 그 代替를 요구할 수 있다.

② 支給材料 또는 貸與品の 인도시기는 豫定工程表에 의하고 그 인도 장소는 示方書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 현장으로 한다.

③ 乙은 支給材料 또는 貸與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保管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사용하고 남은 支給材料는 設計圖書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甲의 지시에 따른다.

⑤ 工事内容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사용할 수 없게 된 支給材料 또는 사용완료된 貸與品은 지체없이 甲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第11條 (材料의 配合 등) ① 工事材料中 配合를 요하는 것은 甲의 立會下에 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見本檢査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水中 또는 地下에 埋設되는 공사 기타 完工後 外部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甲의 立會下에 시공하여야 한다.

第12條 (設計의 疑問·條件의 變更)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乙은 甲에게 통지한다.

1. 設計圖書와 工事現場의 상태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地盤 등의 施工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發見된 때

2. 設計圖書 또는 甲의 지시에 不當하다고 인정되는 점이 있을 때

② 甲이 第1項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조사를 하고 乙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工事内容·工期·都給金額 등의 변경을 요할 때에는 甲·乙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 다만, 협의가 成立되지 아니할 때에는 乙은 工事を 중지할 수 있다.

第13條 (不適合한 工事) ① 甲은 設計圖書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乙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乙은 都給金額의 增額 또는 工期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.

② 第1項의 부적합한 施工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乙은 그 책임이 없다.

1. 甲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한 때
2. 支給材料·貸與品·指定材料의 성질 또는 지정된 시공방법에 의한 때

3. 甲이 인정 또는 지시한 工事材料나 施工方法에 의한 때

4. 기타 甲의 歸責事由에 기인한 때

第14條 (工事의 변경) ① 甲은 工事内容의 변경 또는 추가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工期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乙은 불가항력 기타 사유가 있는 때에는 甲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工期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.

第15條 (都給金額의 變更)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都給金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.

1. 工事의 변경 또는 추가가 있는 때
2. 支給材料의 品目·數量·引渡場所의 변경이 있는 때
3. 工期内에 物価·賃金 등이 都給金額에 현저한 영향을 끼친 때

② 第1項에 의하여 都給金額의 변경요구가 있는 때에는 甲·乙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 이 경우 增減額의 산정은 工事의 감소부분에 대하여는 工事都給內譯書에 의하고 증가부분에 대하여는 時價에 의한다.

第16條 (応急措置) ① 乙은 災害防止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리 応急措置를 취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甲이 災害防止 기타 工事의 施工上 긴급 부득이한 때에는 乙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③ 第1項 및 第2項의 措置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甲·乙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第17條 (一般의 損害) ① 공사를 完工引渡하기 前에 工事目的物·工事材料·貸與品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는 乙의 부담으로 한다. 다만, 그 손해가 甲의 歸責事由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第18條 (第三者에게 미친 損害)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第三者에게 미친 손해에 대하여는 乙이 그 賠償責任을 진다. 다만, 乙만으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때에는 甲은 이에 協力하고 그 손해가 乙의 責任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한 때에는 甲이 책임을 진다.

第19條 (不可抗力에 의한 損害) ① 天災地變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工事의 既成部分이나 檢査完了된 工事材料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乙은 지체없이 그 상황을 甲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第1項의 損害가 발생하였을 때 乙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注意義務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甲의 부담으로 하되 그 損害額은 甲·乙이 협의결정한다.

第20條 (檢査 등) ① 乙이 工事を 완공한 때에는 甲에게 竣工檢査를 요청하고 甲은 요청일로부터 ()日 이내에 乙의 立會下에 竣工檢査를 하여야 한다.

② 第1項의 檢査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乙은 甲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補修 또는 改造하여 甲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.

③ 甲은 工事目的物의 일부가 檢査에 합격된 때에는 그 既成部分의 都給金額 상당액의 全額을 지급하고 그 引渡를 받을 수 있다.

④ 乙은 工事が 완공된 후에는 지체없이 假設物의 철거

기타 工事現場의 정리를 한다.

⑤ 第4項의 處理가 지연되고 최고하여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甲이 처리하고 그 費用을 乙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第21條 (都給金額의 支給 등) ① 第20條 第1項의 檢사에 합격한 때에는 甲은 乙에게 도급금액의 全額을 지급하고 同時에 乙은 工事目的物을 甲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

② 甲이 都給金額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한 때에는 乙의 청구에 의하여 工事に 착수할 때까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.

③ 乙이 既成部分給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甲은 檢사에 합격한 既成部分 및 工事現場에 반입하여 檢사완료된 工事材料에 대한 都給金額상당액의 10分の 9를 청구일로부터 ()日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.

④ 乙이 第2項에 의하여 先給金을 받은 때에는 第3項의 청구액은 다음에 의하여 산출한다.

請求額 = 第3項에 規定된 金額

$$\times \frac{(\text{都給金額} - \text{受領한 先給金})}{\text{都給金額}}$$

第22條 (部分使用) ① 甲은 工事施工中이라도 乙의 동의를 얻어 工事目的物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甲은 그 사용부분에 대한 管理責任을 진다.

② 甲이 第1項의 부분사용에 의하여 乙에게 損害를 미치게 한 때에는 그 損害를 배상하여야 한다.

第23條 (瑕疵擔保) ① 第2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 檢査日로부터 ()年 內에 工事目的物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乙은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, 그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② 室内裝飾·家具 등의 하자는 引渡한 때에 甲이 檢사하여 즉시 그 補修 또는 代替를 요구하지 아니하면 乙은 第1項의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. 다만, 숨은 하자에 대하여는 引渡日로부터 6個月間 擔보책임을 진다.

③ 工事目的物의 하자가 甲이 지시한 시공방법에 따른 시공 또는 第2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部分使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甲의 부담으로 한다.

第24條 (履行遲滯) ① 乙이 契約期間內에 공사를 완공, 引渡하지 못한 때에는 지연된 每1日에 대하여 都給金額(檢사완료한 既成部分이 있는 경우에는 都給金額에서 그 부분의 都給金額상당액을 공제한 잔액)의 ()分の ()의 違約金을 甲에게 지불하여야 한다.

② 甲이 工事目的物의 인도기일에 都給金額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된 每1日에 대하여 都給金額(乙이 수령한 先給金 또는 既成部分給이 있는 경우에는 都給金額에서 이를 공제한 잔액)의 ()分の ()의 違約金을 乙에게 지불하여야 한다.

③ 甲이 第2項의 지체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乙은 工事目的物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사목적 물의 관리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甲이 부담하여야 한다.

第25條 (甲의 工事中止 또는 解約權) ① 甲은 사정에 의

하여 工事を 중지시키거나 契約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損害는 乙에게 배상하여야 한다.

② 甲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工事を 중지시키거나 또는 契約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損害는 乙이 甲에게 배상하여야 한다.

1. 乙이 정당한 사유없이 着工期日內에 착공하지 아닐 때
2. 乙이 정당한 사유없이 工期內에 工事を 完工할 가망이 없을 때
3. 第3條 또는 第13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는 때
4. 乙이 第26條 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契約의 해제를 요구할 때.

第26條 (乙의 工事中止 또는 解約權) ① 乙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工事を 중지할 수 있다.

1. 甲이 先給金 또는 既成部分給의 지급을 지체하고 乙이 相當한 기간을 정하여 催告하여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.
2. 甲이 정당한 사유없이 第12條 第3項·第14條 第2項 또는 第15條 第2項에 의한 協議에 불응할 때.

② 乙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契約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甲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에 의한 工事遲延 期間 또는 工事中止期間이 工期の 3분의 1이상이 될 때.
 2. 甲이 工事內容을 변경함으로써 都給金額이 3분의 2이상 감소되는 때
 3. 甲이 都給金額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
- ③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 乙은 甲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第27條 (解約後의 처리) ① 契約을 해제한 때에는 工事의 既成部分과 檢사완료한 工事材料는 甲이 引受 함을 원칙으로하되 甲·乙이 協議하여 정산한다.

② 甲이 第25條 第2項에 의하여 契約을 해제한 경우 精算結果 過拂이 있는 때에는 乙은 그 過拂額에 대하여 支給日로부터 年利 ()%의 利子를 가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.

③ 第1項 이외에 各 当事者에게 귀속하는 物件이 있는 경우에는 期間을 정하여 引繼·引受 등의 뒷처리를 한다.

④ 第3項의 경우에 当事者 一方이 정당한 사유없이 뒷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대방이 처리하고 그 費用을 請求할 수 있다.

第28條 (紛爭) ① 이 契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当事者 雙方이 協議·選定한 第三者에게 분쟁의 중재를 의뢰하고 雙方은 그 중재에 따른다.

② 第1項에 의하여 紛爭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各 当事者는 建設業법에 의한 建設業紛爭調整委員會에 調整을 申請할 수 있다.

第29條 (契約外의 事項) 이 契約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甲·乙이 協議하여 결정한다.